2023년도 제3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3년도 제3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회의일시 : 2023. 6. 9.(금) 14:00~16:00

☐ 회의장소 : 한국전력 강남지사 7층 회의실

☐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결
7건	6건	-	1건	-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일반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 결	안건수	원안 접수
1건	1건	-	-	-	1건	1건

붙 임 : 1.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2. 보고사항 결과

2023. 6. 9.

위원장	한국전력거래소	정동희
위 원	한국전력거래소	김홍근
	산업통상자원부	강경택
	서울과학기술대	유승훈 (불 참)
	건국대학교	노재형
	법무법인 광장	조영재
	한국전력공사	박헌규
	한국중부발전	박영규
	SK E&S	단희수
간 사	한국전력거래소	옥기열

김상환/20230627095508

0897602504168782726

【붙임 1】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선임(안)

제3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일반의결안건 제2023-3-1호
개최일시	2023년 6월 9일 14:00~16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☐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의 변경사유 발생에 따라 신임위원 선임 필요

☐ 의결 내용

구 분	현 행		차 기 (선임 대상)	
	성 명	소속 및 직책	성 명	소속 및 직책
회원대표	한장희	한국수력원자력 기획처장	**윤승호**	**한국수력원자력 기획처장**

주요 토의내용

☐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6월 9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

김상환/20230627095508

08976025041687827264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등 채무불이행 조치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3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3-1호
개최일시	2023년 6월 9일 14:00~16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직접전력거래(이하 "직접PPA")제도는 재정보증 가입의무가 없음 ㅇ 장외거래인 직접PPA 참여자의 비용부담경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□ 이에, 부가정산금 및 거래수수료 수취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필요 □ 부가정산금 및 거래수수료의 채무불이행 대비 보증금계좌를 신설하여, 채무불이행 발생 시 부족금액을 충당하여 지급하고자 함 * 직접PPA가입 시 보증금(2개월 부가정산금+수수료)를 보증금계좌에 입금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**ㅇ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6월 9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

김상환/20230627095508
08976025041687827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자 자율성 및 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3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3-2호
개최일시	2023년 6월 9일 14:00~16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**집합전력자원의 정의 변경**을 통한 **운영주체(중개사업자) 명확화** 및 **중개사업자 본인 소유 소규모 전력자원**도 **집합전력자원에 구성 가능**함을 명시**(제1.2조 제9호)** □ 영구적 용량감소 발생으로 **주요자원 용량이 20MW 이하**가 될 경우, **발생일이 속한 달의 익월 1일 기준 3개월 내 복구**토록 개정하여 **복구가능 기간이 매우 짧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(제14.2.3조)** □ 예측제도 참여사업자의 **대상자원 등록기간 선택권을 부여(익월 또는 익익월)**하여 익월부터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는 현행 규정 완화**(제14.3.3조 및 제14.3.4조)**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 - **다만, 제14.2.3조의 문구 명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표현을 일부 수정**

기존 개정(안)	수정(안)
제14.2.3조(대상자원 내 주요자원 용량유지) 예측제도 대상자원에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여 대상자원 내 주요자원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에서 20MW 이하가 된 경우, 20MW 초과에서 20MW 이하가 된 날 기준 익월 1일(거래일 기준)부터 3개월이 되는 날(이하 "복구가능기간"이라 한다) 이내에 해당 대상자원 내 주요자원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로 복구되지 못할 경우 제3절에 따른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등록제외된다. 단, 복구가능기간 중 해당 대상자원 내 주요자원 용량 추가 감소 시에도 복구가능기간은 신규 또는 추가 부여되지 않는다.	**제14.2.3조(대상자원 내 주요자원 용량유지)** 예측제도 대상자원에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여 대상자원 내 주요자원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에서 20MW 이하가 된 경우, 20MW 초과에서 20MW 이하가 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일(거래일 기준)부터 3개월이 되는 날(이하 "복구가능기간"이라 한다) 이내에 해당 대상자원 내 주요자원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로 복구되지 못할 경우 제3절에 따른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등록제외된다. 단, 복구가능기간 중 해당 대상자원 내 주요자원 용량 추가 감소 시에도 복구가능기간은 신규 또는 추가 부여되지 않는다.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6월 9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상환/20230627095508
08976025041687827264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질권설정 및 실행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지급 관련 규칙개정(안)

제3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3-3호
개최일시	2023년 6월 9일 14:00~16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**질권실행 전까지 질권설정자(발전사)에게 거래대금 지급 조항 신설** ○ 질권자 동의 후 질권설정자(발전사)에게 거래대금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○ 별지 제42-3호, 제42-4호 질권설정 통지서에 질권설정 채권의 변제 방식 중 지급보류 또는 질권설정자에게 지급 선택항목 신설 □ **질권실행 통지 후 질권자에게 직접 지급 원칙 및 1회의 통지만으로 거래대금 지급 조항 신설** ○ 질권자에게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법원 공탁 가능하고 질권자의 최초 1회 통지만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 □ **별지 제43-1호, 제43-2호 채권양도/질권설정 해지통지서 별첨(동의서)의 오탈자 정정**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심의보류** ✓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심의보류하는데 동의함** **<심의보류 사유>** ▪ 민법, 질권계약(질권자-질권설정자)과 본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내용 간 정합성 검토 등을 거쳐 해당 검토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3년 6월 9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

김상환/20230627095508
08976025041687827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규정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3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3-4호
개최일시	2023년 6월 9일 14:00~16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**조합별 비용함수 제도 시행('23.11월 이내)에 앞서 일부 규정보완**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, 이를 보완하는 규칙개정을 진행코자 함 □ **(운전조합판단규정 보완)** 운전조합 판단규정 명확화 및 개별계량이 불가능한 발전기의 운전여부 판단을 위한 표시기 신설 ○ **(판단규정 명확화)** 개별 GT·ST **운전정보(병입/병해) 미입력시 직전 운전여부 준용** 및 **별도 처리근거 마련** ○ **(표시기 신설)** GT·ST **개별계량이 불가능**한 복합발전기의 **기동비 정산**을 위해 발전기 **운전여부 표시기 신설** □ **(기타사항)** 변경입찰서 누락사항 기재, 기동비 산출내역서 별지서식 보완
주요 토의내용	□ 회의결과 : 원안가결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6월 9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0897602504168782726 4
김성환/20230627095508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수요반응자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3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3-5호
개최일시	2023년 6월 9일 14:00~16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수요반응자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등록시험, 감축시험은 **특정 기간*에 시행하여 예측이 가능, 불시상황의 감축능력 검증을 위한 추가 제도마련 필요** * 등록시험 : 등록 신청기간 이후 등록완료일의 10일 전까지 시행(통상 11월 1주~3주) 감축시험 : 12월 및 6월 1주~2주(감축재시험 : 12월 및 6월 3주~4주)에 시행 □ **(감축신뢰성시험)** 신뢰성DR 미발령시 **불시 시험**을 통해 신뢰성 검증 ○ **신뢰성DR 발령실적을 고려**하여 동·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 중 **불시에 감축신뢰성시험 시행** (동계1회, 하계1회) □ **(감축재시험 선택)** 감축시험 **불합격 자원**의 **재시험 여부 선택** ○ 감축신뢰성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추가 검증함에 따라 감축시험 불합격 자원에 대한 감축재시험은 사업자가 시행 여부를 결정* * 감축재시험 미시행시 감축시험의 이행률에 비례하여 용량조정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6월 9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생략)

김상환/20230627095508
08976025041687827264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주파수DR 계량기준 완화 및 시험규정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(안)

제3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3-6호
개최일시	2023년 6월 9일 14:00~16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태양광 밀집지역의 발전정지에 따른 **계통주파수 하락 우려가 지속**될 것으로 예상되어, 이에 대비한 **수요측 추가자원 발굴이 요구됨** ○ **현재 등록가능한 부하는 대부분 소규모 부하**인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부하의 **주파수DR 등록 확대를 위한 경제적 유인** 마련 필요 □ 주파수 수요반응참여고객의 **계량기준 완화**, 주파수DR **시험규정 신설**, 주파수연계 **감축량 정산기준 마련** 및 **참여고객 등록기회 확대(연2회 → 연4회)** 등 주파수DR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 시행
주요 토의내용	□ 회의결과 : 원안가결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6월 9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상환/20230627095508
08976025041687827264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페어발전기 운영계획 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3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3-7호
개최일시	2023년 6월 9일 14:00~16:00
제 안 자	한국서부발전
제안내용	□ 현재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**기력발전소의 경우 급전정지 및 기동시 페어발전기* 운영**을 시행하고 있음 * [별표9] (붙임8-3) 페어발전기 운영 계획 기준 □ 운영계획 기준 **세부내용에 급전정지 외 기동시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여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기동시 운영내용을 추가**하고자 함 ㅇ 페어발전기 2대 모두 정지 중인 경우 우선 1대만 기동 ㅇ 이후 추가 기력발전기 기동시 연료비 순위에 따라 기동하되 발전단지별 운전여건 고려하여 기동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ㅇ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 ㅇ **(기타의견)** 경제급전 외에 **발전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급전원칙 도입** 필요 - 우선순위가 높은 **저비용 발전기에만 급전이 집중**될 경우, **잦은 기동정지**에 따른 **설비 및 계통 안정성 저하** 문제 발생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6월 9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서명)

0897602504168782726 4
간상환/20230627095508

【붙임 2】

보고사항 결과

보 고 내 용	보 고 결 과
▪ **(제1호)** 전차(제23-2차) 규칙개정위원회 결과보고	○ **원안 접수**

김성환/20230627095508

08976025041687827264